입 찰 유 의 서

1. 목 적

이 유의서는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본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입찰 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합니다.

② 기타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한다.

6.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수행자는 신분증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입찰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7.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며, 이 병기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밀봉 후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④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대로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 한다.

12.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일정 및 요청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한다.

13. 설치완료 및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에 설치완료하여야 한다. 설치완료기간이 지연된 경우 지체보상금은 지연 일수당 정산금액(매회당)의 3/1000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4.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15.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